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12.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12.

(유)공유경제지원센터

대표 송동현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9
제1절 충청남도 인구 현황	9
제2절 충청남도 농업의 총조사 현황	16
제3절 충청남도 농산물유통관련 현황	18
 III. 충남 청년 농업인 실태 및 성공사례 조사	23
제1절 충청남도 4-H회 현황	23
제2절 청년농업인 사례	24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5
제1절 충남 청년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
제2절 청년기본조례 현황	27
제3절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현황	28
제4절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현황	30



제5절 충청남도 시군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34
제6절 기관별 지원 방안 모색	42
 V. 청년 농업인 정착 잠재력 우수 지역 추천	43
제1절 충청남도 추진사업	43
제2절 정착 잠재력 우수 지역 추천 및 제언	44
 VI. 부록(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기본조례)	45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

-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청년문제임. 청년세대의 심각한 고용위기는 생산력 약화로 인한 노인 부양위기이자 결혼, 출산의 기피 등으로 이어져 미래 출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충청남도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있었어도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던 것이 사실임.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있었으나 주로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취업 관련 교육·훈련기회 제공, 창업 자금·컨설팅 지원 등 재래식의 대중적 처방이 중심이며, 경제 외 이슈를 포함한 종합적인 청년정책 방향 설정이 부재하고,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계층의 참여는 미흡하였음
- 충청남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 농가 수는 132,011세대로 2005년 대비 약 16% 가량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 역시 그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2015년 기준 농가인구는 308,46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28% 가량 줄고 있음.
-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39세 이하 농가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2015년도 충청남도의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57,041명으로 이는 2010년도 보다 약 41.0% 감소한 것이며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53.4%가 줄었다. 이러한 충남의 후계인력 부족 심화는 농촌농업 분야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농촌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소멸 위기임
- 지역 내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농업인의 실태는 조사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범위는 어떠한고 그 대상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어왔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함
- 2019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18.95%로 고령사회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23.27%로 초고령사회를 나타내고 있음

1)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6 인용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 범 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 대 상 : 청년 농업인 및 농업농촌 현황

나. 연구의 방법

- 통계분석
 - 충청남도 농업 총조사 현황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의 농업 농촌 변화 분석
 - 충청남도 인구 분석을 통해 인구 수 및 인구구조 변화 비교분석
- 사례분석
 -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례조사
 -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정착 사례조사
- 제안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정책 방향 제안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 제안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1. 충청남도 인구현황

가. 전국 및 충청남도 인구변화

-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18.95%로 고령사회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23.27%로 초고령사회를 나타내고 있음²⁾

표 1 전국 및 충청남도 5세별 인구변화 비교

구분	전국(명)		충청남도(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2,281,200	2,083,981	99,348	90,830
5-9세	2,557,315	2,419,042	107,382	104,064
10-14세	3,290,668	2,758,522	132,836	114,872
15-19세	3,519,340	3,067,408	133,983	121,416
20-24세	3,127,804	3,248,184	120,453	125,580
25-29세	3,799,705	3,659,089	142,950	132,267
30-34세	3,893,138	3,536,166	149,009	136,101
35-39세	4,431,642	4,189,795	167,865	163,268
40-44세	4,403,554	4,125,463	164,746	158,931
45-49세	4,312,085	4,389,826	165,502	170,716
50-54세	3,945,392	4,105,307	151,664	160,818
55-59세	2,781,324	3,535,862	113,485	145,706
60-64세	2,188,467	2,897,122	96,094	122,419
65-69세	1,904,258	2,204,778	93,342	103,268
70-74세	1,537,054	1,763,363	89,545	91,710
75-79세	999,589	1,304,968	64,801	72,064
80세 이상	907,282	1,223,118	55,971	73,761
80-84세	553,441	769,727	34,274	45,542
85세 이상	353,841	453,391	21,698	28,219
85-89세	256,658	331,059	15,654	20,717
90-94세	78,043	98,037	4,853	6,026
95-99세	16,503	21,307	1,032	1,292
100세 이상	2,638	2,989	160	185

2)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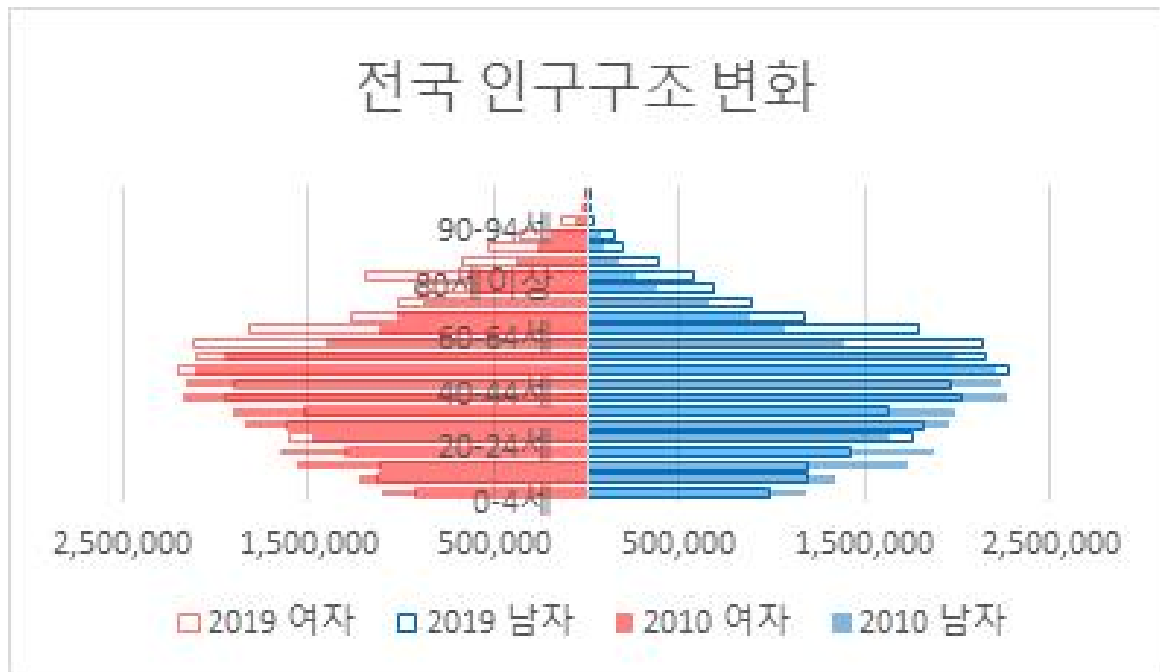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5세별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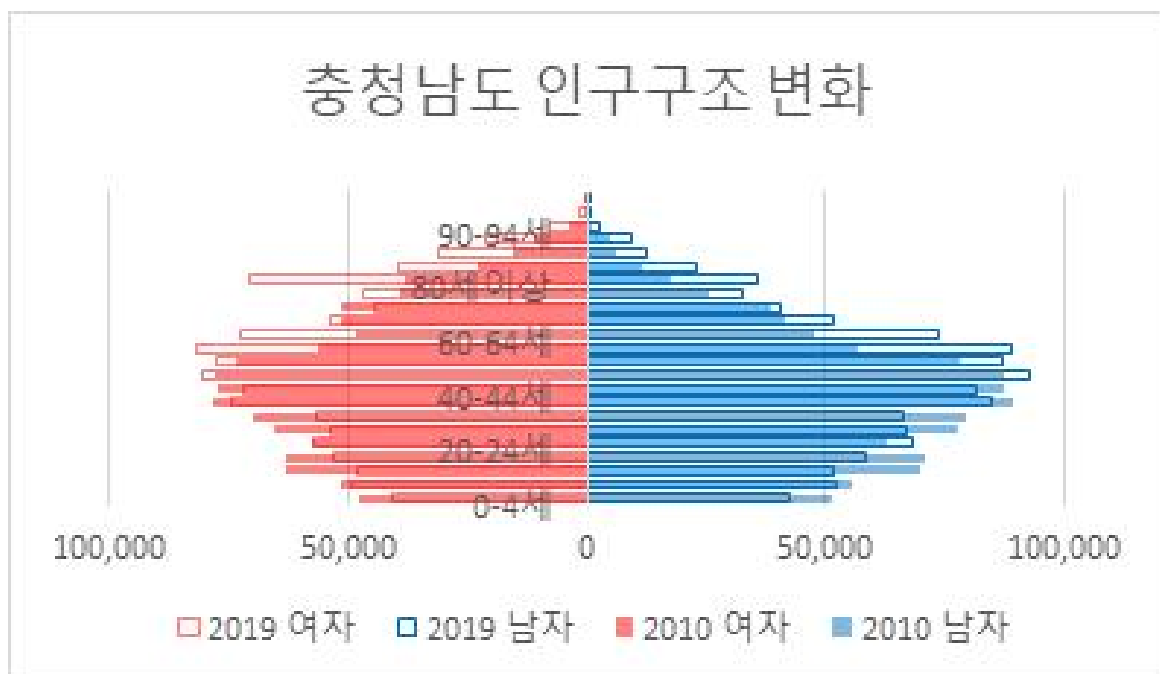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남도 5세별 인구수 및 인구구조 변화

나. 15개 시군 5세별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 충남 15개 시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천안(13%), 계룡(14%), 아산(16%)순으로 고령사회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를 나타냄
- 서천(43%), 청양(42%), 부여(41%), 예산(37%) 순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 충청남도 15개 시군 5세별 인구변화 비교

시점	천안시(명)		공주시(명)		보령시(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30,832	30,380	4,409	3,542	4,181	3,455
5-9세	33,468	33,999	5,409	4,493	4,943	4,337
10-14세	42,125	37,306	7,439	5,542	6,424	5,202
15-19세	41,353	39,097	8,308	6,401	6,534	5,478
20-24세	34,764	41,176	7,998	7,273	5,949	5,702
25-29세	45,612	47,881	7,903	6,568	6,346	5,435
30-34세	48,286	49,074	7,050	5,772	6,466	5,267
35-39세	52,878	56,857	8,416	6,990	7,875	6,825
40-44세	51,647	52,835	9,196	7,643	7,892	7,054
45-49세	47,406	51,526	10,485	9,133	8,717	8,462
50-54세	36,684	43,733	10,510	9,679	8,757	8,695
55-59세	22,574	35,620	8,023	9,244	7,105	8,475
60-64세	16,676	25,696	6,601	8,156	6,382	7,764
65-69세	14,271	18,184	6,735	7,277	5,979	6,552
70-74세	12,522	14,513	6,481	6,377	5,641	5,788
75-79세	8,711	10,693	4,865	5,193	3,959	4,569
80세이상	7,713	10,397	4,218	5,403	3,448	4,626
80-84세	4,727	6,516	2,575	3,265	2,174	2,931
85세이상	2,987	3,882	1,643	2,138	1,274	1,696
85-89세	2,170	2,853	1,196	1,579	903	1,235
90-94세	672	824	362	449	300	370
95-99세	132	189	75	96	63	80
100세이상	13	17	11	15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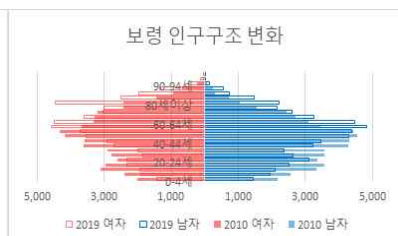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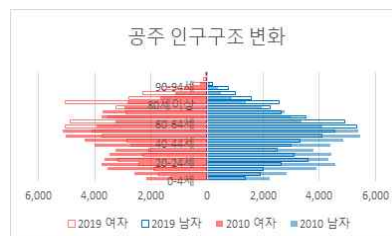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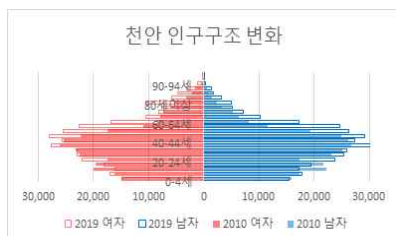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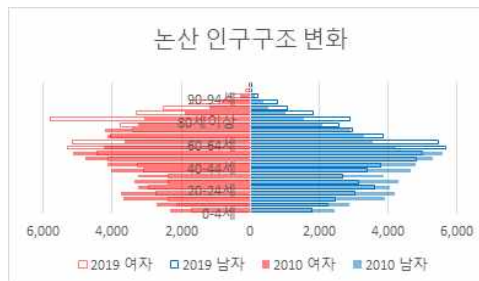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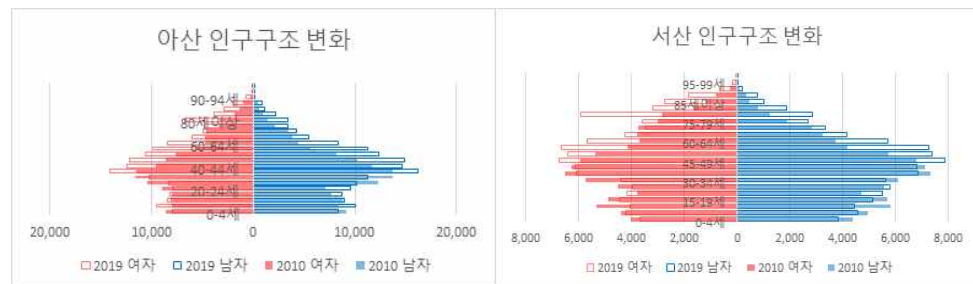


표 2 충청남도 15개 시군 5세별 인구변화 비교(계속)

시점	아산시(명)		서산시(명)		논산시(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17,757	16,949	8,412	7,872	4,792	4,136
5-9세	16,402	18,037	9,363	8,956	5,606	4,975
10-14세	16,931	17,049	11,171	9,773	7,561	6,133
15-19세	15,787	16,781	10,571	9,984	7,947	6,789
20-24세	16,027	18,550	8,473	9,260	7,311	6,839
25-29세	22,680	20,607	10,069	10,293	7,670	6,524
30-34세	25,411	22,989	11,837	11,382	7,120	5,953
35-39세	25,172	27,695	13,828	13,359	8,709	7,420
40-44세	21,273	24,211	13,387	13,078	8,950	7,929
45-49세	18,848	23,461	12,706	13,806	10,071	9,599
50-54세	15,923	20,021	11,117	12,775	10,734	10,127
55-59세	11,309	16,933	8,321	11,406	8,460	9,887
60-64세	9,228	13,164	7,428	9,395	7,211	9,092
65-69세	8,632	10,200	7,029	7,961	7,443	7,989
70-74세	8,090	8,804	6,578	7,094	7,108	7,157
75-79세	5,610	6,790	4,879	5,665	5,333	5,812
80세이상	4,775	6,656	4,095	5,703	4,616	5,951
80-84세	2,837	4,143	2,446	3,517	2,918	3,716
85세이상	1,938	2,513	1,649	2,186	1,699	2,235
85-89세	1,388	1,848	1,152	1,582	1,214	1,622
90-94세	451	538	388	473	401	496
95-99세	86	115	92	110	70	96
100세이상	14	13	18	22	14	22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표 2 충청남도 15개 시군 5세별 인구변화 비교(계속)

시점	계룡시(명)		당진시(명)		금산군(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2,567	2,091	7,297	7,529	2,129	1,606
5-9세	3,108	2,829	7,074	8,067	2,198	1,979
10-14세	4,004	3,542	8,291	8,182	2,793	2,400
15-19세	3,760	3,642	8,357	8,070	2,929	2,587
20-24세	2,412	2,722	7,634	8,072	2,966	2,726
25-29세	2,268	2,212	9,871	9,489	3,304	2,477
30-34세	3,038	2,575	10,723	10,864	3,112	2,327
35-39세	4,430	3,869	11,573	12,870	3,594	2,825
40-44세	4,686	4,191	11,117	12,053	3,790	3,226
45-49세	4,020	4,312	11,157	12,739	4,367	4,097
50-54세	2,822	3,275	10,539	12,152	4,578	4,498
55-59세	1,683	2,288	8,201	11,199	4,029	4,745
60-64세	1,067	1,700	7,227	9,294	3,547	4,377
65-69세	889	1,260	6,854	7,641	3,871	4,166
70-74세	827	1,032	6,848	7,136	3,847	3,825
75-79세	634	738	4,626	5,417	2,781	3,077
80세이상	626	785	4,090	5,719	2,307	3,020
80-84세	395	476	2,437	3,516	1,409	1,869
85세이상	232	309	1,653	2,203	899	1,151
85-89세	174	234	1,175	1,588	663	859
90-94세	49	64	383	507	187	237
95-99세	5	8	81	92	42	48
100세이상	4	4	15	16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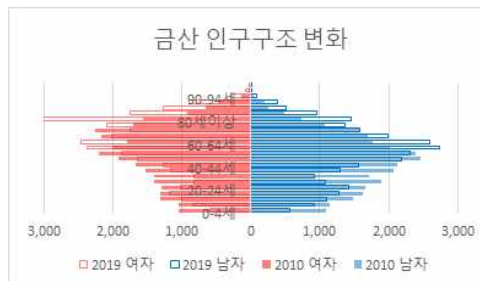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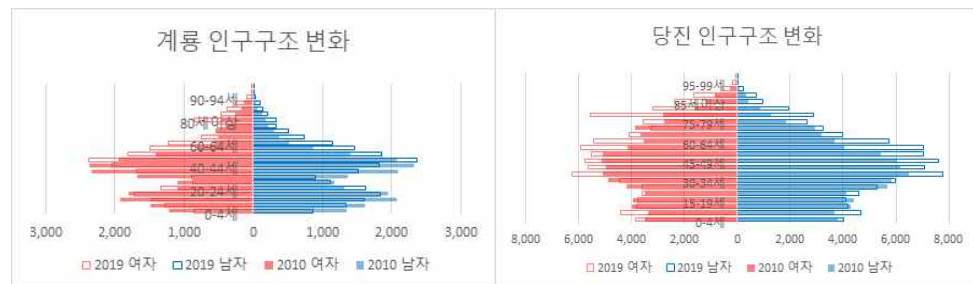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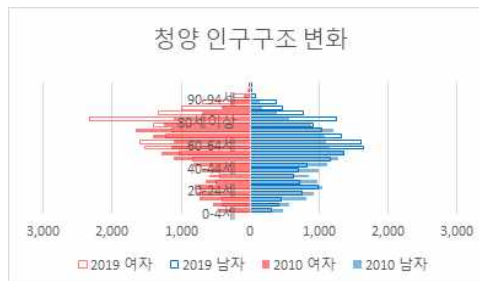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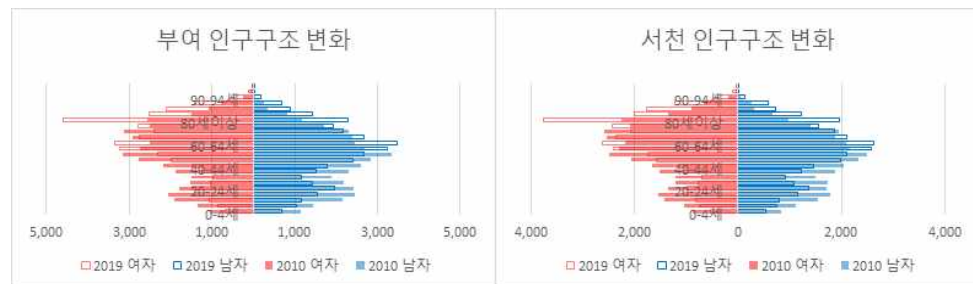


표 2 충청남도 15개 시군 5세별 인구변화 비교(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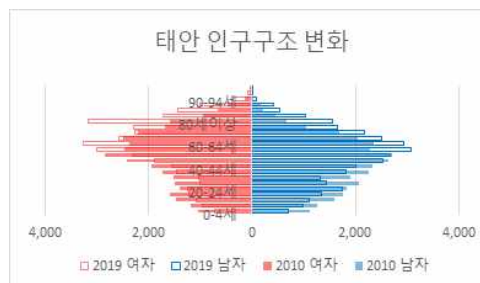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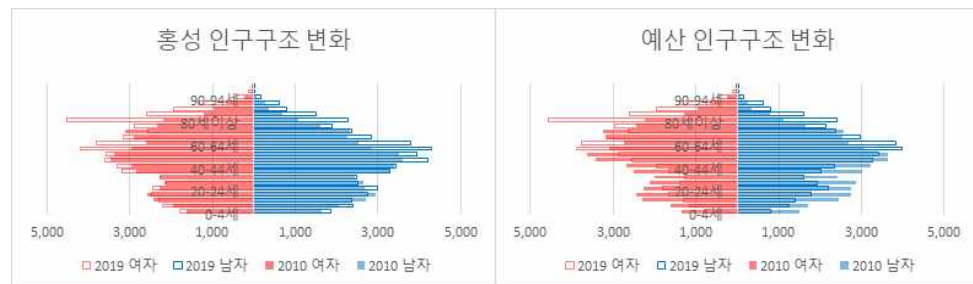
시점	부여군(명)		서천군(명)		청양군(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2,180	1,736	1,707	1,402	938	763
5-9세	2,805	2,388	2,166	1,784	1,100	954
10-14세	4,086	3,083	2,981	2,230	1,540	1,183
15-19세	4,500	3,608	3,327	2,693	1,695	1,522
20-24세	4,188	3,746	3,071	2,729	1,797	1,735
25-29세	3,713	2,943	2,940	2,286	1,613	1,363
30-34세	3,359	2,639	2,700	2,117	1,436	1,211
35-39세	4,191	3,389	3,407	2,750	1,695	1,395
40-44세	4,777	3,944	3,715	3,121	1,933	1,654
45-49세	5,601	5,177	4,411	4,061	2,384	2,270
50-54세	6,476	5,833	4,973	4,595	2,651	2,641
55-59세	5,417	5,958	4,479	4,893	2,294	2,787
60-64세	4,961	5,968	4,254	4,806	2,209	2,723
65-69세	5,299	5,577	4,415	4,651	2,494	2,731
70-74세	5,417	5,278	4,520	4,449	2,870	2,700
75-79세	4,201	4,428	3,495	3,636	2,136	2,156
80세이상	3,733	4,866	3,232	4,211	1,681	2,360
80-84세	2,317	2,911	2,011	2,574	1,098	1,481
85세이상	1,416	1,955	1,221	1,637	584	879
85-89세	1,020	1,434	919	1,232	439	669
90-94세	312	421	238	325	112	164
95-99세	71	86	60	73	31	43
100세이상	14	14	6	8	2	3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표 2 충청남도 15개 시군 5세별 인구변화 비교(계속)

시점	홍성군(명)		예산군(명)		태안군(명)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2010년	2019년
0-4세	3,264	3,496	2,858	2,169	2,140	1,743
5-9세	4,004	4,326	3,313	2,841	2,434	2,165
10-14세	5,119	4,778	4,727	3,675	3,069	2,583
15-19세	5,539	5,330	5,170	4,214	3,358	2,939
20-24세	4,961	5,267	5,016	4,460	3,220	3,148
25-29세	4,788	4,669	4,973	4,053	3,567	2,939
30-34세	4,724	4,748	4,428	3,605	3,411	2,830
35-39세	6,134	6,112	5,522	4,521	3,969	3,531
40-44세	6,334	6,387	5,884	5,012	4,273	3,948
45-49세	7,062	7,662	7,060	6,688	5,073	4,947
50-54세	6,869	7,318	7,260	7,020	5,546	5,511
55-59세	5,791	7,252	6,173	7,084	4,750	5,558
60-64세	5,111	6,390	5,432	6,582	4,718	5,289
65-69세	5,165	5,739	5,698	6,121	4,536	4,993
70-74세	5,436	5,476	5,809	5,628	3,875	4,381
75-79세	3,943	4,243	4,097	4,588	2,748	3,341
80세이상	3,242	4,469	3,362	4,656	2,254	3,145
80-84세	1,924	2,719	2,057	2,877	1,382	1,962
85세이상	1,319	1,750	1,305	1,779	872	1,183
85-89세	938	1,274	930	1,313	636	882
90-94세	304	385	303	378	178	232
95-99세	66	80	62	77	53	63
100세이상	11	11	11	12	6	7



2. 충청남도 농업의 총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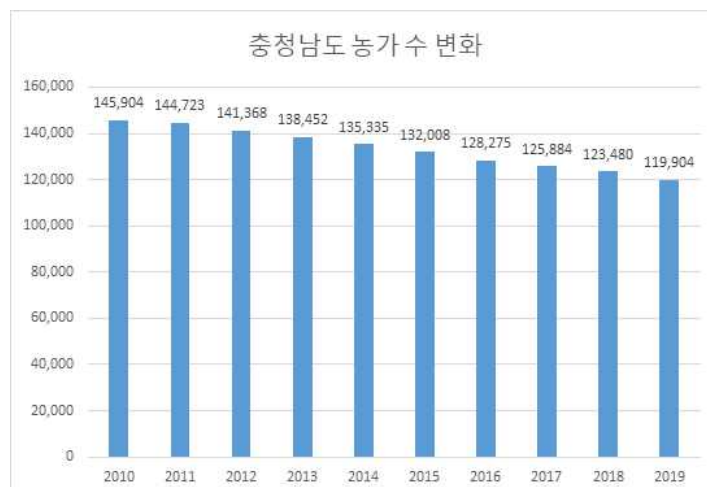
가. 농가 수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농가 수 변화를 보면 2010년 기준 2019년도 농가 수 감소율은 충청남도 21.68%로 나타남
- 15개 시군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한 시군은 서산, 홍성, 부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40.06%, 36.87%, 30.83%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이 낮은 지역은 계룡, 서천, 천안시로 각각 7.23%, 8.80%, 9.79%로 나타남

표 3 충청남도 농가수 변화

(단위 : 가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충청남도	145,904	144,723	141,368	138,452	135,335	132,008	128,275	125,884	123,480	119,904
천안시	12,406	12,515	11,978	12,218	11,906	11,651	11,861	12,126	11,477	11,300
공주시	12,089	11,943	11,740	11,611	11,394	10,151	9,770	9,740	9,554	9,441
보령시	9,006	8,808	8,447	8,400	8,178	8,646	8,675	8,418	8,098	7,502
아산시	10,499	10,706	10,462	10,202	10,061	9,463	9,332	8,851	8,835	8,684
서산시	13,320	13,107	13,046	12,846	12,810	12,229	11,677	10,319	9,833	9,510
논산시	11,925	11,676	11,348	10,500	9,931	10,572	10,429	10,609	10,466	10,414
계룡시	549	548	552	519	554	558	543	542	514	512
당진시	13,489	13,359	13,052	12,251	11,751	11,533	12,195	11,946	11,702	11,160
금산군	7,638	7,300	7,115	7,559	7,424	6,783	6,958	6,379	6,284	6,309
부여군	10,905	10,856	10,247	9,978	10,046	9,607	8,904	8,902	8,615	8,335
서천군	7,136	7,022	6,961	6,538	6,560	6,651	5,713	6,471	6,641	6,559
청양군	6,427	6,062	5,939	5,805	5,761	6,837	6,150	5,899	5,761	5,612
홍성군	11,082	11,148	10,981	10,503	10,092	9,628	8,804	8,553	8,411	8,097
예산군	11,118	11,247	11,288	11,066	10,671	10,314	10,041	9,922	9,896	9,380
태안군	8,315	8,426	8,212	8,456	8,196	7,385	7,223	7,207	7,393	7,089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나. 농가인구 수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농가인구 변화를 보면 2010년 기준 2019년도 농가인구수 감소율은 충청남도 49.86%로 나타나며 15개 시군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한 시군은 홍성, 서산, 부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73.66%, 67.44%, 56.81%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이 낮은 지역은 서천, 청양, 태안군으로 각각 24.90%, 30.63%, 32.64%로 나타남

표 4 충청남도 농가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충청남도	394,324	378,094	367,944	356,158	328,993	308,455	296,801	288,800	276,426	263,124
천안시	36,774	34,912	33,207	33,803	32,240	31,268	29,257	29,933	27,799	27,424
공주시	31,577	31,068	30,457	29,179	28,401	24,111	24,469	23,818	22,287	21,460
보령시	22,632	21,456	20,899	20,188	19,565	19,791	18,980	18,751	17,542	16,024
아산시	30,019	30,090	28,845	27,557	26,755	23,232	21,662	21,264	20,971	20,231
서산시	33,778	33,007	32,801	30,619	29,958	28,243	26,822	22,925	21,375	20,173
논산시	31,185	31,326	30,080	27,574	25,733	24,909	24,215	24,402	22,903	21,639
계룡시	1,647	1,540	1,576	1,521	1,564	1,499	1,398	1,343	1,206	1,174
당진시	35,729	34,112	32,343	30,100	28,840	27,230	30,532	28,309	26,870	25,823
금산군	19,188	17,187	17,254	18,225	17,674	14,641	15,827	15,040	13,795	13,605
부여군	27,798	26,267	25,275	24,200	23,763	22,213	20,298	20,014	19,607	17,727
서천군	17,255	16,224	15,689	14,270	13,994	14,651	11,485	13,166	14,156	13,815
청양군	15,694	13,839	13,698	13,257	13,026	14,960	13,354	12,796	12,264	12,014
홍성군	28,274	26,685	26,422	24,815	23,686	22,243	18,474	18,029	17,289	16,281
예산군	28,280	26,587	26,171	26,420	24,979	23,744	24,641	23,743	22,629	21,210
태안군	19,266	19,274	18,856	19,665	18,816	15,720	15,388	15,266	15,733	14,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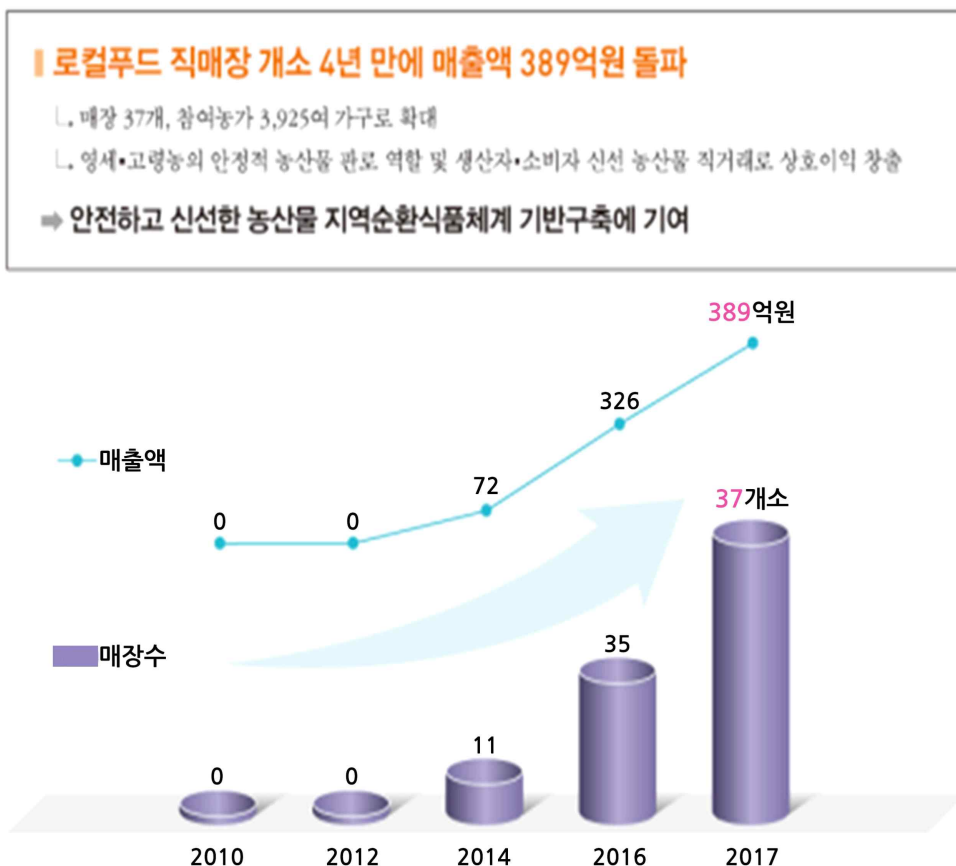


3. 충청남도 농산물유통관련 현황3)

-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 총 45개의 사업을 민선7기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농산물 매출, 농가, 고용 증가와 로컬푸드매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개소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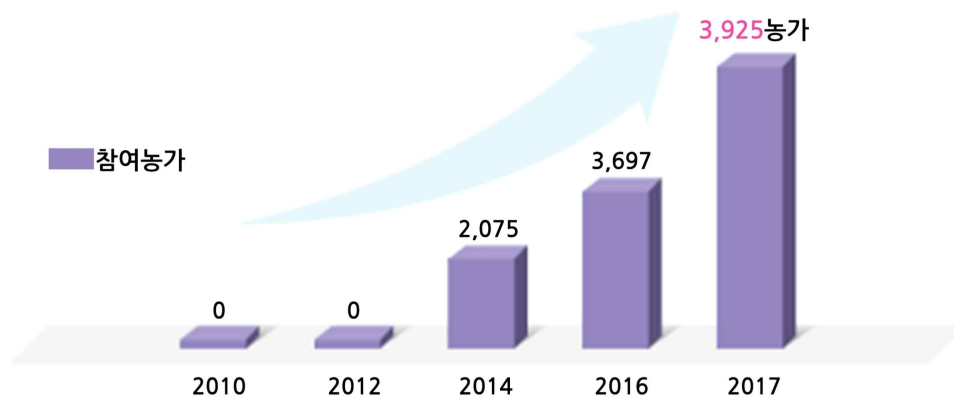
가. 로컬푸드 직매장 실적

- 농산물 유통정책 장단기 추진전략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389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매장 수 37개소, 참여농가 3,925 가구로 확대되었음



3) 민선 7기 농산물 유통정책 장단기 추진전략(2018.11)

Ⅱ.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장터 또한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2017년 기준 25개소, 매출액 50억원으로 나타남

Ⅰ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 '14) 7개소, 매출액 5억 → '17) 25개소, 50억(4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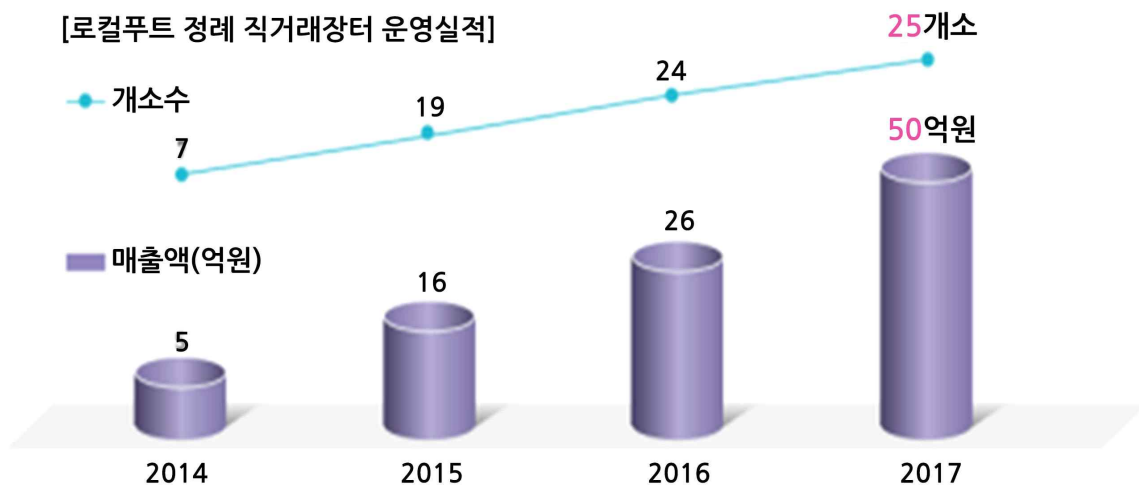
※ 대전MBC 푸른밥상 직거래장터 운영

↳ '15) 10억(6만명) → '16) 16억(11만명) → '17) 23억(17만명)

※ 전국최초 광역직거래센터 건립(도, 논산시, 대전MBC)

↳ 연면적 1,869㎡ / 사업비 21.6억원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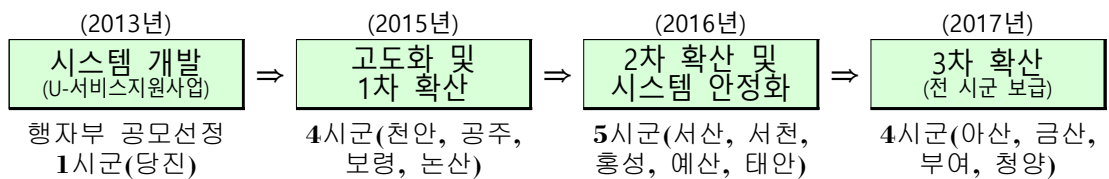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체계 확립

- 센터설립 : '11)1개소 → '14)4개소 → '16)8개소 → '17)10개소 → '18)13개소
- 학교규모나 벽지오지 상관없이 전품목 동일가격 일괄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 향후 푸드통합지원 전산시스템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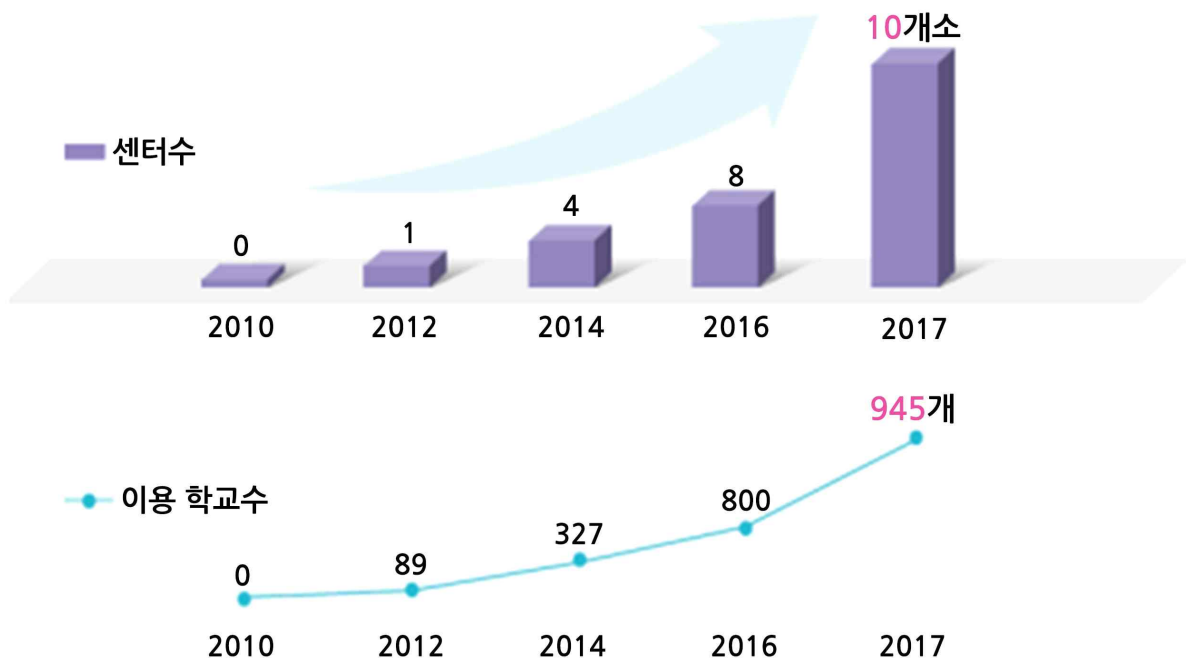
- 수.발주, 검수.검품, 정산관리 등 급식센터 업무 효율화를 위해 광역시스템 자체개발



- 시스템 개발의 선결조건인 식재료 간소.표준화 추진 : 영양교사 협조
- 시·군별 5만개 수준의 식재료를 6천개 수준으로 간소.표준화

지원시스템 확산 성과

- ① 센터와 학교, 급식업체간 소통문제 해결 및 수.발주 업무량 경감
- ② 학교급식 농산물 수요량 통계 확보로 품목별, 시기별 출하량 예측에 활용
- ③ 생산자(농가, 업체)와 소비자(학교) 간 거래내역 등의 정보화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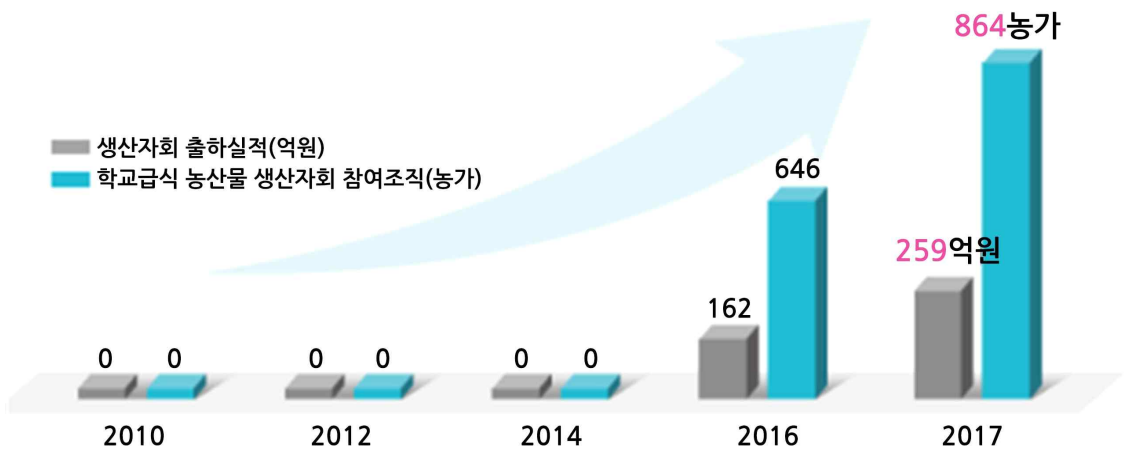
II. 충남지역 농업 농촌 여건 및 인구 현황

□ 친환경 등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을 위한 작부구축 및 출하회 육성

- 중소농의 소득향상과 다품목 소량 기획생산을 위한 광역, 시·군 작부체계구축 및 출하회 육성
- '16년 8시군 94품목 646농가 ⇒ '17년 12시군 109품목 767농가
- '17년 작부구축을 통한 출하회 실적 239억, 농가당 27백만원 매출기록
-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 '13) 28% ⇒ '17) 61%

□ 지역순환 가공품의 센터 공동구매로 기획생산-가공-유통-소비 체계 구축

- 충남산 콩 사용 전통식품인증업체(10개)의 전통장류(고추장·된장·국간장)를 시군급식 센터에서 조달해 초·중학교에 공급
- 조달체계 : 광역센터(품질기준, 업체선정, 가격결정 등) ⇒ 시군센터(계약, 학교배송 등)
- 앞으로 지역순환 가공품 확대(두부·콩나물, 충남밀 국수·짜장·카레·만두 등)



다. 인터넷 쇼핑몰 「충남 농사랑」운영

□ 온라인 및 모바일 전자상거래 급증

- 2017년 온라인 쇼핑액 78조, 모바일 쇼핑액 48조 / 지속적 증가추세

□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지원

- 영세·소농가의 농산물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도록 마케팅, 판촉, 판매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파워블로거, 인기 SNS를 활용한 고객맞춤형 모바일 홍보
- 시외버스 외장광고, 연합뉴스 TV광고, 승차권 광고, 서울광장 전광판 광고 등 브랜드 노출 홍보, 농사랑 홍보관 운영

□ 우체국 등 기존 제휴물을 활용한 공격적 이벤트 추진

- 신규가입회원 이벤트, 농사랑 브랜드전 개관, 단체주문 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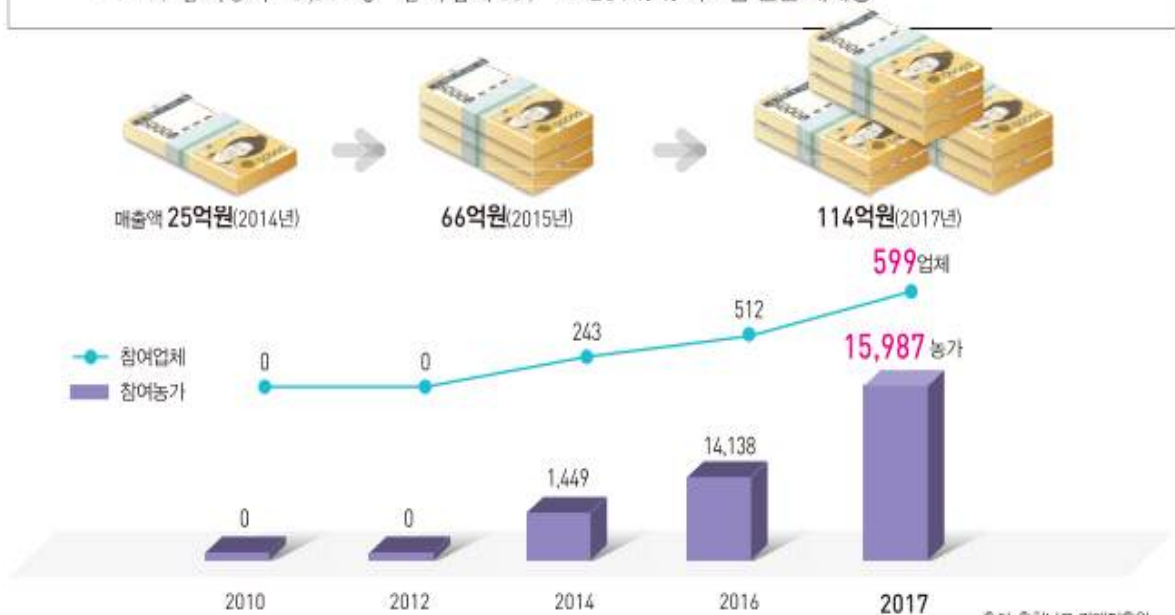
* 제휴물 : 우체국, 옥션, G마켓, 네이버 등

□ 농사랑 쇼핑몰 운영으로 농산물 홍보·판촉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2018.6.)매출액 101억, 참여농가 16,018, 회원 13,900, 등록상품 3,300

Ⅰ '농사랑' 매출액 114억원, 재개장 3년 만에 4.5배 이상 증가

↳ '17) 참여농가 15,987명 참여업체 599 ※ 2014. 4. 시스템 전환 재개장



Ⅲ. 충남 청년 농업인 실태 및 성공사례 조사

1. 충청남도 4-H회 현황⁴⁾

- 4-H 는지성(Head), 덕성(Heart), 근로(Hand), 건강(Health)의 뜻을 지닌 4개의 영단어머리글자를 나타냄
- 충청남도 4-H회원 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중 회원 수 감소를 나타내는 곳은 공주, 부여, 예산군으로 나타남

표 5 충청남도 4-H회 현황

(단위:명)					
시 군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조직수	285	14	14	14
	회원수	8,882	670	786	870
천안시	조직수	18	14	1	1
	회원수	574	670	44	58
공주시	조직수	17	1	1	1
	회원수	539	33	72	65
보령시	조직수	8	1	1	1
	회원수	424	58	70	74
아산시	조직수	29	1	1	1
	회원수	918	27	39	55
서산시	조직수	24	1	1	1
	회원수	1,098	35	40	55
논산시	조직수	23	1	1	1
	회원수	604	63	65	80
계룡시	조직수	8	-	-	-
	회원수	340	-	-	-
당진시	조직수	17	1	1	1
	회원수	554	38	41	49
금산군	조직수	14	1	1	1
	회원수	363	55	58	66
부여군	조직수	12	1	1	1
	회원수	493	81	83	73
서천군	조직수	9	1	1	1
	회원수	315	53	66	75
청양군	조직수	5	1	1	1
	회원수	202	51	69	77
홍성군	조직수	24	1	1	1
	회원수	754	47	50	54
예산군	조직수	39	1	1	1
	회원수	768	47	49	41
태안군	조직수	32	1	1	1
	회원수	873	36	40	48

4) 충남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 청년농업인 사례5)

구분	귀농귀촌 계기	어려운점	희망사항
후계농업인 (33세)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	후계농업으로 부모님과 농업에 대한 관념의 갈등 귀촌에 대한 주변에서의 안 좋은 시선 (도시생활에서 실패 후 이주한 것으로 인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농지확보)	귀농귀촌인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멘토 연구회를 조직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마련
귀농인 (39세)	주말농장 2년의 경험	농업에 대한 지식 부족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경작지 조성, 농지 구입, 주거지 조성 관련)
귀농인 (34세)	반복적인 일상을 탈피하고자 창업을 알아보다 귀농선택	농업의 기술부족	영농정착지원 확대가 필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농업의 특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 강화 필요
귀농인 (34세)	도시텃밭을 가꾸면서 결심	거주지 마련과 생활비 마련 원주민들과의 소통과 귀농인을 경계하는 따가운 시선	초기 거주공간마련과 기초생활비지원 귀농인들의 모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5) 충남연구원,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및 정책 추진방향 인용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청년 농업인의 기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15세 이상 29세 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UN연령기준: 18세 이상 65세 이하

1. 충남 청년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충남 15개에서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청년의 기준연령이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조례에 표기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 청년지원 기본조례의 제한나이의 경우 34세, 39세, 45세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9월 기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었음

표 6 충청남도 청년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청년지원 (기본)조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관한조례	기타 조례
충청남도	18세 이상 34세 이하 (제정 2020.07.10.)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세부터 49세까지 (제정 2019.02.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기준 (제정 2015.12.30.)	-
천안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7.11.2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기준 (제정 2016.04.01.)	-
공주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8.12.07.)	만 18세이상 만 40세이하 (제정 2019.11.28.)	15세이상29세이하 (제정 2017.12.08.)	-
보령시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제정 2018.05.10.)	-	-	-
아산시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제정 2017.05.1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기준 (제정 2016.07.01.)	-



표 6 충청남도 청년관련 조례 제정 현황(계속)

구분	청년지원 (기본)조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관한조례	기타 조례
서산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8.11.20.)	18세이상 40세미만 (제정 2019.12.18.)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 시행령 기준 (제정 2018.04.20.)	시간제 및 청년 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 한 조례 15세 이상 29세미만 (제정 2015.12.29.)
논산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제정 2018.08.10.)	-	-	청년창업 지원 조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제정 2019.09.30.)
계룡시	18세 이상 34세 이하 (제정 2018.02.20.)	-	-	-
당진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7.05.30.)	-	-	-
금산군	18세 이상 34세 이하 (제정 2017.09.29.)	-	-	-
부여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8.12.14.)	만18세이상만 39세이하 (제정 2020.10.02.)	-	-
서천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7.02.28.)	-	-	청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8.12.31.)
청양군	18세 이상 45세 이하 (제정 2017.04.18)	-	-	청년창업 지원 조례 18세이상 45세이하 (제정 2019.11.21.)
홍성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7.05.30.)	18세이상 39세이하 (제정 2019.12.30.)	-	-
예산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9.05.24.)	-	-	-
태안군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제정 2018.04.11.)	18세이상 40세미만 (제정 2020.08.07.)	-	-

2. 청년기본조례 현황

- 청년기본조례는 공통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 됨
- 이외에도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청년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표 7 전국 청년기본조례 현황

구분	청년범위	청년 기본계획	청년 정책연구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 협의체	청년센터	청년시설
서울	만15세~ 29세	○	○	○		○	○
대구	만19세~ 39세	○	○	○		○	○
광주	만19세~ 39세	○	○	○	○	○	
경기	만15세~ 29세	○	○	○		○	○
충북	만15세~ 39세	○	○	○	○	○	○
충남	만18세~ 34세	○	○	○			
전남	만18세~ 29세	○	○	○	○		○
경남	만19세~ 34세	○	○	○		○	○
제주	만19세~ 34세	○	○	○		○	

3.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현황

- 충청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 중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11곳으로 조사 됨
- 금산, 보령, 계룡, 예산, 태안군에서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8 충청남도 청년지원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 현황

구분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기본계획
충청남도	제정 2020.07.10.	2016.12
천안시	제정 2017.11.21.	2019.10
공주시	제정 2018.12.07.	2019.9
보령시	제정 2018.05.10.	-
아산시	제정 2017.05.15.	2017.12
서산시	제정 2018.11.20.	2018.12
논산시	제정 2018.08.10.	2019.12
계룡시	제정 2018.02.20.	-
당진시	제정 2017.05.30.	2017.12
금산군	제정 2017.09.29.	-
부여군	제정 2018.12.14.	2018.12
서천군	제정 2017.02.28.	2018.12
청양군	제정 2017.04.18.	수립중(2020.09착수)
홍성군	제정 2017.05.30.	2020.06
예산군	제정 2019.05.24.	-
태안군	제정 2018.04.11.	-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청년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기본계획수립, 정책연구, 정책위원회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년협의체, 청년센터, 청년시설의 경우 내용이 없는 조례가 대다수임

표 9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현황

구분	청년범위	청년 기본계획	청년 정책연구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 협의체	청년센터	청년시설
충청 남도	18세 이상 34세 이하	○	○	○	-	-	-
천안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공주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보령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	○	-	-	-
아산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	-	○	-
서산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논산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	○	-	-	○
계룡시	18세 이상 34세 이하	○	○	○	-	-	-
당진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금산군	18세 이상 34세 이하	○	○	○	-	-	-
부여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서천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청양군	18세 이상 45세 이하	○	○	○	-	-	-
홍성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예산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태안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	○	-	-	-



4.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현황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 하고 있음

표 10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현황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영농 4-H회원 영농정착지원 (2,450백만원:도20%,군 40%, 자담60%)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2억원 한도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16백만원:국)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7개소) (귀농창업보육센터:3개소)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창업:3억원 한도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농협융자)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7개소) (귀농창업보육센터:3개소) -(대학생)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국: 충남대, 천안연암대 선정)
	교육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300백만원:국50%,시 군50%)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312백만원:국50%, 시군50%) -귀농귀촌 교육 (400백만원:국165, 도95, 시군비140)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조성 운영 (270백만원:도30%, 시군70%)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10백만원:국50%, 도50%) -귀농귀촌 교육 (400백만원:국165, 도95, 시군비140) -(고교생)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국)
농업 외	소득	-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도30%, 시군70%) -귀농귀촌설명회(7개소)	
	주거	-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7개소)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귀농주택구입, 신축 지원: 50백만원 한도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농협융자)	
통합지원		농업기술센터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400백만원:국50%,시군50%) -귀농지원센터(16개소)(320백만원: 도110, 시군210) -귀농귀촌정착지원(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7개소)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보면 점진적으로 5개 사업에서 22개사업으로 증가 되었으며 지원받은 인원은 2016년 189명에서 2020년 1,451명으로 약 7.6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11 최근 5년간 지원현황

사업명	(단위: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89	395	928	1,624	1,451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지원	6	5	5	6	4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 정착지원	35	35	35	32	35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24	26	31	-	4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30	30	-	-	-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94	81	62	-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	30	30	28	-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	12	11	11	13
청년창농안정지원	-	30	26	35	-
도시청년 초부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	15	12	12	-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	131	422	450	280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	-	5	7	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	148	260	456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	-	-	130	150	-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시범	-	-	11	4	-
청년농업인 신성장활동	-	-	-	107	152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	-	-	-	14	20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	-	-	-	2
초보농부 경영실천농장(인큐베이션팜) 운영	-	-	-	8	4
청년농부되기 진로교육	-	-	-	500	300
청년농업인 4차 산업기반조성	-	-	-	-	3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 지원	-	-	-	-	98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활용 기능교육	-	-	-	-	43

- 2020년 청년정책 실행계획은 4대정책, 8개분야, 32개사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됨

슬로건	청년이여, 충남에 머물러 유(留)			
목 표	청년들이 찾고 머무는 충남 실현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 지원)			
정 책	樂: 즐겁다	地: 자리잡다	生: 생활하다	根: 정착하다
	참여·문화	주거	생활	일자리
분 야	참여소통 문화육성 능력개발	주거지원	금융지원 복지증진	일자리 창업지원

자료 : 충남농업기술원, 2020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실행계획

-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문화정책과, 건축도시과, 교육법무담당관, 사회복지과, 사회적경제과, 소상공기업과, 어촌산업과, 농업기술원 등 10개 부서가 참여하여 사업 추진

樂(낙)	참여소통 (4)	▶충남청년네트워크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신규)충남청년의 날 ▶청년 자원봉사 콘텐츠 기획단
	문화육성 (4)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청년 음악창작소 ▶청년 만화작가 웹툰창작소
	능력개발 (3)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신규)지역청년멘토 육성 ▶(신규)청년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地(지)	주거지원 (3)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生(생)	금융지원 (1)	▶청년대상 금융경제교육
	복지증진 (2)	▶충남 뿌리내릴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지원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지원기준 : ■ 39세 이하 ■ 34세 이하

5. 충청남도 시군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⁶⁾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기준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의 사업실적이 조사되어 있었음
- 14개 시군 중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의 수는 당진이 13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룡이 2개 사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비 기준으로는 부여가 459,450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룡이 6,000천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표 12 충청남도 시군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업수	개소당 사업비(예산, 천원)		
		계	도비	시비
천안	10개 사업	230,900	58,170	157,730
공주	11개 사업	285,400	87,720	197,680
보령	10개 사업	389,800	62,940	266,360
아산	7개 사업	233,000	40,200	192,800
논산	7개 사업	127,500	41,550	85,950
계룡	2개 사업	6,000	3,900	9,100
당진	13개 사업	328,000	101,200	224,050
금산	10개 사업	326,500	78,450	228,050
부여	9개 사업	459,450	131,880	327,570
서천	11개 사업	433,400	133,770	290,630
청양	9개 사업	365,000	75,150	269,850
홍성	6개 사업	248,000	80,700	167,300
예산	6개 사업	309,500	99,150	210,350
태안	9개 사업	360,800	108,750	243,050

6) 충남농업기술원 내부자료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천안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10개 사업

표 13 천안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10,000	3,000	7,000	10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10,500	3,150	7,350	350부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70,000	21,000	49,000	2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청년지식 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23,400	7,020	16,38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1개소
청년 농업인 4-H 회 드론 제작 및 방제	30,000		15,000	1개소 (3명)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및 활성화(4-H 회)	8,000		8,000	1개소 (120명)
4차산업혁명 선진 기술 도입	20,000		20,000	1개소 (6명)

□ 공주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11개 사업

표 14 공주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5,000	1,500	3,500	5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9,000	2,700	6,300	300부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청년지식 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23,400	7,020	16,380	1개소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조성	49,000	21,000	28,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1개소
청년농업인 창농스쿨운영	5,000		5,000	1개소 (24명)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10,000		10,000	1개소 (100명)
학교 4-H 공동체 농심 체험장 조성	20,000		20,000	2개교 (60명)



□ 보령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10개 사업

표 15 보령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10,000	3,000	7,000	10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11,400	3,420	7,980	380부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35,000	15,000	20,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청년지식 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23,400	7,020	16,38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1개소
청년농업인아이디어실용화시범	120,000		84,000	2개소 (2명)
ICT청년방제단육성	60,000		40,000	1개소 (8명)
2020스마트드론교육	15,000		10,500	1개소 (6명)

□ 아산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7개 사업

표 16 아산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6명
4-H회 정보지 지원	9,000	2,700	6,300	300부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학교4-H프로젝트 활동지원	28,000	3,000	25,000	11개교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35,000	10,500	24,500	1개소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	49,000	21,000	28,000	1개소
청년창업농 융자금 이자 지원	102,000	-	102,000	34명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논산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7개 사업

표 17 논산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7,000	2,100	4,900	7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16,500	4,950	11,550	550부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35,000	10,500	24,500	1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1개소
4-H 회원 품목별 공동과제 현장 교육	10,000		10,000	1개소 (20명)

□ 계룡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2개 사업

표 18 계룡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3,000	3,000	7,000	10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3,000	900	2,100	100부



□ 당진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13개 사업

표 19 당진시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 프로젝트 활동지원	7,000	2,100	4,900	7개교
4-H회 정보지 지원	12,000	3,600	8,400	400부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58,000	25,000	33,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5,000	1,500	3,500	1식
청년농업인 농업전문 자격취득지원	5,000	1,500	3,500	1개소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지역농업 활력화 현안사업	84,000	36,000	48,000	1개소
4-H회 육성	17,000		17,000	19단체 (600명)
4-H연합회 육성활동지원	5,000		4,750	1개소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10,000		10,000	8개소
4-H본부 활동지원	5,000		4,750	1개소
4-H과제발표회	5,000		4,750	1개소
4-H영농교육 시범농장	10,000		8,000	1개소

□ 금산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9개 사업

표 20 금산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9,000	2,700	6,300	9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7,500	2,250	5,250	25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 농업인 국내 우수 농장 기술 연수 지원	10,000		10,000	2개소 (30명)
4-H연합회 과제포 지원	5,000		5,000	1개소 (56명)
4-H회원 역량강화육성지원	10,000		10,000	1개소 (56명)
청년농업인CEO리더십 양성지원	40,000		20,000	2개소 (2명)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부여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9개 사업

표 21 부여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프로젝트 활동지원	10,000	3,000	7,000	10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9,600	2,880	6,720	32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140,000	42,000	98,000	4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98,000	42,000	56,000	2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4-H 희망찾기 프로그램	9,500		9,500	1개소 (20명)
2040 농업인협의회육성교육	12,350		12,350	1개소 (56명)
스마트 농업인 육성	40,000		40,000	1개소 (200명)

□ 서천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11개 사업

표 22 서천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8,000	2,400	5,600	8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4,500	1,350	3,150	15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140,000	42,000	98,000	4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23,400	7,020	16,38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4차 산업화 기반조성	42,000	18,000	24,000	1개소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농업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18,000		9,000	1개소 8명
청년농업인4-H회원 국내우수농장 배낭연수	5,000		5,000	1개소 35명
청년농업인4-H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3,500		3,500	1개소 30명



□ 청양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9개 사업

표 23 청양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1,000	300	700	1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4,500	1,350	3,150	15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사업	100,000		80,000	5개소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재료지원	1,000	-	1,000	4개소
2040 젊은영농세대 육성 워크숍	6,000	-	6,000	1개소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사업	7,500	-	7,500	2개소

□ 홍성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6개 사업

표 24 홍성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9,000	2,700	6,300	9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15,000	4,500	10,500	50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35,000	10,500	24,500	1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IV.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예산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6개 사업

표 25 예산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5,000	1,500	3,500	5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10,500	3,150	7,350	35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105,000	31,500	73,500	3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 태안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_9개 사업

표 26 태안군 2020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도비	시비	사업 개소수
학교4-H회 프로젝트 활동지원	6,000	1,800	4,200	6개소
4-H회 정보지 지원	16,500	4,950	11,550	550부
청년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70,000	21,000	49,000	2개소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49,000	21,000	28,000	1개소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농업 전문자격 취득지원	70,000	21,000	49,000	1개소
청년농업인 4차 산업화 기반조성	42,000	18,000	24,000	1개소
영농 4-H 시범 영농	30,000		21,000	1개소 (2명)
태안군 4-H 경진대회	7,300		7,300	1개소 (530명)

6. 기관별 지원 방안 모색

□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방향

- 농업 후계자 육성정책과 청년의 귀농정책의 분리
- 청년농업인들의 전업농과 전략적으로 다른 농업의 다기능성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정책마련 필요
- 정착비지원사업 확대 및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마련 필요
- 청년농업인의 지역 내에서의 관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지원과 지역 주민들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필요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방향

- 청년농업인에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접근하지 못한 예비 귀농인, 귀촌인 등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함
- 청년농업인은 농업의 전승 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유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차원에서의 접근이 바탕이 되어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지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15개 시군중 몇몇 시군의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변모될 수 있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효과를 더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농업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복지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청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V. 청년 농업인 정착 잠재력 우수 지역 추천

1. 충청남도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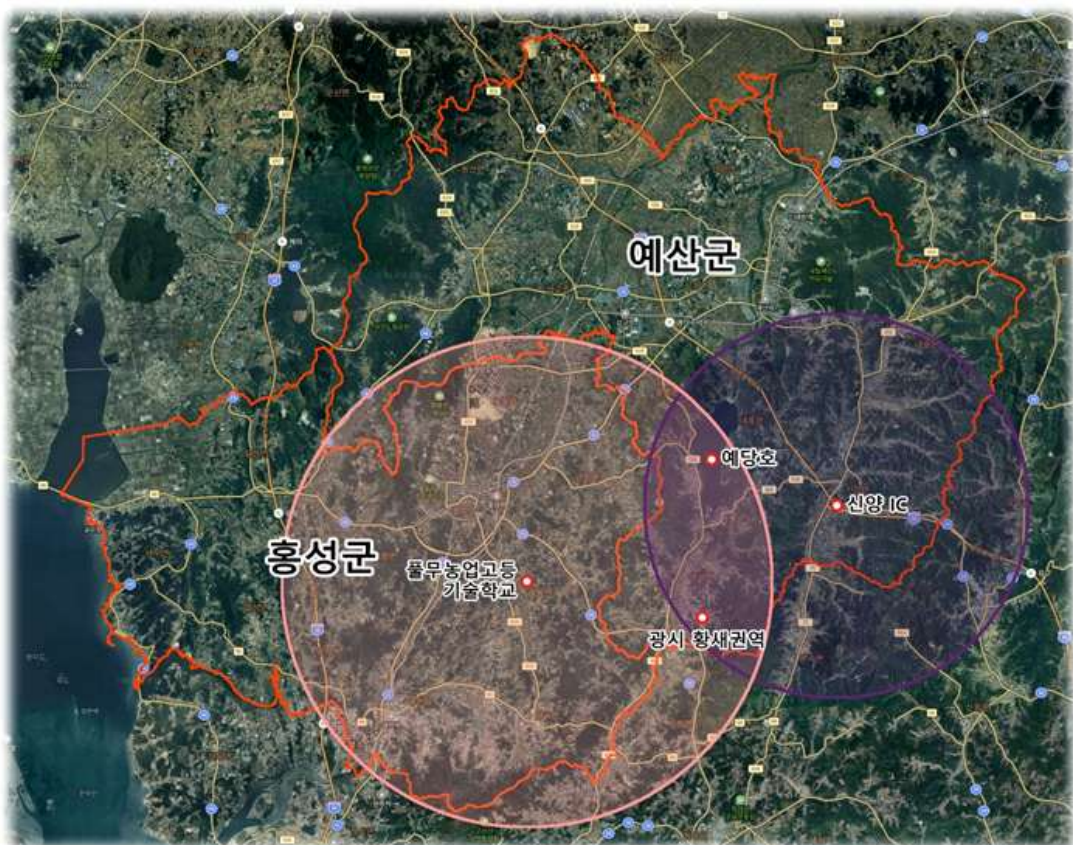
- 충청남도에서는 마을정보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이 공모신청사업인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조성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표 27 예당호 주변 귀농, 귀촌, 예술인촌 형성사업 추진계획

단위사업	추진계획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수요자 모집 및 사업 토지 확보		사례조사 및 방침결정	사업토지 확보 실수요자 확보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사업 토지 매입				마을정비조합 구성 및 사업 토지 매입			
마을정비 조합에서 용역수립 및 공모 신청				마을정비조합 에서 용역수 립	농식품부 공모 신청 및 공모 결과		
법적 절차 진행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행계 획수립		
제영향평가				전략환경 (초안)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성 (행정계획)	전략환경(본 안) 사전재해영향 성 (시행계획)		
부지조성공사						부지조성 공사	부지조성 공사
개별건축공사							개별건축 공사

2. 정착 잠재력 우수 지역 추천 및 제언

- 청년농업인대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에대한 전수조사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기본조례의청년 기준 정립
- 청년 기본조례 내용 중 청년 시설 및 청년센터설립 추진 필요
-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예당호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조성과 연계 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 조성 필요
- 청년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예당호 주변 조성되는 귀농·귀촌·예술인 촌과 인접한 로컬푸드판매장 설립을 통한 소득증대 대책 마련 필요
- 예당호주변 풀무학교와유기농농업항새권역등 친환경농업을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가 필요
- 충남 외부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유입과 기술이전이 가능한센터시설구축 필요



1.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6-02-22 조례 제 4094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4187호
 (일부개정) 2017-02-28 조례 제 4225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 4426호
 (일부개정) 2019-12-30 조례 제 4631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0-07-10 조례 제 47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0.7.10.>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7.10.>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개정 2020.7.10.>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 2020.7.10.>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전복지실장, 공동체지원국장,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 2020.7.10.>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 2. 28., 2020.7.10.>
-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신설 2020.7.10.>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개정 2020.7.10.>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개정 2020.7.10.>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신설 2016. 12. 30.>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신설 2016. 12. 30.>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신설 2020.7.10.>
 -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 나.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8.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신설 2020.7.10.>
 - 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이용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방안 강구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5장 보칙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다), 시·군,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천안시 청년기본조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7.11.21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18.07.23 조례 제1745호

(일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912호

(일부개정) 2020.06.22 조례 제20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7.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
 -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호
 -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 마. 청년의 부채경감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 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3.>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천안시의회의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3.>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 제적 등) ①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경제·사회·교육·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제25조(청년의 부채경감) ①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부채경감을 위해 학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
7.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부터 제25조의 추진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체육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청년일자리팀장”을 “청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912호, 2019.7.11.>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134)까지 생략



3.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정) 2018.12.07 조례 제1212호

(일부개정) 2019.11.28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20.09.21 조례 제1362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가.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초조사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신설 2019.11.28.)
 -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 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신설 2019.11.28.)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의 결정과정에 참여 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19.11.28.)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조문이동 2019.11.28.) (개정 2020. 9.21.)

제1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9.11.28.)

부 칙(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생략.
- 제30항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31항 이하 생략.
- 제4조 생략.

부칙(조례 제1212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01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8.05.10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20.08.20 조례 제16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 08. 20.>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 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수행 및 발굴
4.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자원조달 방안
5. 청년 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보령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08. 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중 1명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08. 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삭제 <2020. 08. 20.>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08. 20.>
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개정 2020. 08. 20.>
3.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개정 2020. 08. 20.>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 08. 20.>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 다.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라.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
 - 나.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 다. 근로자 취업보상제 실시,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 나.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
 -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등

제17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6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08. 20.>

④ 시장은 예산·복지·문화·관광·체육·경제분야 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으로 1명 이상의 청년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중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 08. 20.>

제19조(포상)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0. 08. 20.>

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아산시 청년기본조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7.05.15 조례 제1617호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1806호
(전부개정) 2020.05.14 조례 제19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 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개발
 -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 마. 청년의 문화 활동
 -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장 청년위원회

제15조(청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아산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기능)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

제17조(구성)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청년위원회 위원은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단체 활동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아산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아산시 소재 직장(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운영)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③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청년위원회에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 요건은 위원회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참여분과위원회
 - 가. 청년네트워크 구축, 청년참여·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나. 청년의제 공론화에 관한 사항
 - 다.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2. 청년정책분과위원회
 - 가. 지역 청년의 정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나. 청년 자립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청년문화 · 예술분과위원회

가. 청년 예술과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 · 예술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청년정책 및 청년센터

제22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 캠페인 ·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 ·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등 경제적 · 사회적 · 교육적 ·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 · 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의 고용확대)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자금 및 펀드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문화 활동의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청년센터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 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취업 · 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 ·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사업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③ 시장은 제2항의 청년센터를 설치 및 운영,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과 아산시 청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6. 서산시 청년기본조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8.11.20 조례 제129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사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개별적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관련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서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17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장, 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 제17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 나. 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 다.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나.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 다.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나. 청년 축제 개최 및 지원
 -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와 예산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7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7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 타 시·군·구,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8. 11. 20. 조례 제129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2018.08.10 조례 제11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논산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성별 간 균형있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 제척 등) ①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에서 활동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9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87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제정) 2018.02.20 조례 제638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20.11.10 조례 제79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계룡시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10.>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계룡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

면으로 알려져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4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예산담당관, 가족행복과장,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등 청년지원업무와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10.>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1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 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방안 강구
 - 나.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수행) ① 시장은 제11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1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38호, 2018.2.2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796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당진시 청년기본조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7.05.30 조례 제584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610호
(일부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일부개정) 2019.10.30 조례 제7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0.30.>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사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개별적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관련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0.3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및 청년·시설 설치운영 <개정 2019.10.30.>

제1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 나. 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 다.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나.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 나. 청년 축제 개최 및 지원
 -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와 예산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수행) 시장은 제16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6조의 추진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유허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3.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
6.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7.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일부 및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0.>

제5장 보칙

제20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 타 시·군·구,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조번호 이동 2019.10.30. 종전 제19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이동 2019.10.30. 종전 제20조>

부칙<제정 2017.05.30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에너지과장” 으로 한다.

<11>~<25> (생략)

부칙 <개정 2019.10.30.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금산군 청년지원조례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제정) 2017.09.29 조례 제21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용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청년지원 관련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2회
-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네트워크) 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
-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제안
- 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군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 나. 군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 다.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 나. 취업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5.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추진 관련 행사(워크숍 등) 개최
 -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2016.08.12 조례 제2261호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491호 주거기본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군 청년지원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여성·청년지원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⑪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팀장이 된다.
- ⑫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지원<개정 2018.12.14.>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 다. 상해·질병·후유장애·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및 비용 지원.<신설 2018.12.14.>
-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여군에서 활동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91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2017.02.28 조례 제2442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2545호

(일부개정) 2019.10.21 조례 제260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청년”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간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은 업무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 <신설 2018.12.31., 2019.10.21.>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제2442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4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2017.04.18 조례 제2132호

(일부개정) 2018.09.20 조례 제2294호

(일부개정) 2019.01.30 조례 제2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개정 2018.09.20.>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09.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2018.09.20.>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9.20.>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09.20.>
 1. 당연직위원: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라.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9.20.>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9.20.>
 -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9.20.>
 -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
 - ⑩ 위원회의 각종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09.20.>
 - ⑪ <삭제 2019.1.30.>
 -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
- [제목개정 2018.09.20.]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
 -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사업
 -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94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80.(생략)

[81]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14.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 2017.05.30 조례 제2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농어업·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제2346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예산군 청년기본조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9.05.24 조례 제2516호

(일부개정) 2020.05.29 조례 제25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시 청년여성정책위원회분과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지원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단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예산군 청년정책단(이하 “정책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정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예산군 청년정책 수립·사업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년활동단체와의 교류활동
 -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청년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본조신설 2020.5.29.]

제13조(정책단의 구성) ① 정책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되, 직업·직종, 성별·나이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정책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단원은 정책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2. 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 3. 군 소재 직장 재직 중인 청년
 - 4. 군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④ 단장은 정책단을 대표하고 정책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4조(정책단의 운영 및 활동기간) ① 정책단은 기수제로 운영하고, 한 기수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두 기수에 한정한다.

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정책단은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5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29.]

제16조(정책단의 회의 등) ① 정책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정책단을 둘 수 있다.

④ 정책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분과정책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농어업·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7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5.2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516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83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태안군 청년기본조례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8.04.11 조례 제1338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1373호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지도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어업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농어업·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